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31
----------	------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5년 8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 1.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설립예정인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 하고자, 「지

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가.출연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2조
    - ※ 조례 제정안을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
-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3,656,000천원

## 나.주요사업

- 공공보건의료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공공의료기관 경영지원 및 컨설팅
-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통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

## 다.출연의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연이은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예방중심의 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우리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조사 등 씽크탱크 기능 필요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립병원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운영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건강관리체계의 핵심 파트너로서 역동적 공공성 확충 지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확대 발전시켜 다양한 보건 의료분야 전문성과 법인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의 책무와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재단 운영에 드는 경비 출연 필요

※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16. 2), 행정자치부와 출연기관 협의('16. 5) 마침.

####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Ⅲ. 검토보고의 요지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 출연 목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 「지방재정법」 제17조1)에 의하면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2)에 의거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출연이 가능함.

#### 2 공공보건의료재단 개요

- 출연되어 설립할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주요 업무는 다음 표와 같음.

1)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생략)

2)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 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 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단은 2017년 하반기 중 설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씽크탱크이자 지원조직으로 존재하게 될 것임.

### 3 출연안의 타당성

- 서울시는 재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하여 출연하게 될 것임. 이에 정책적인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단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씽크탱크로 존재하며 각종 목적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과 연구성과에 대하여 논할 수는 없음. 그러나 가시적인 척도인 서울시 시립병원의 예산절감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할 것임. 또한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져야 할 것임.

- 행정조직의 특성상 계속하여 성장할 것이 예측되는 바, 재단의 예산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자체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을 통해 재단의 재정안정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정책적으로 볼 때 장기간에 걸친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자와 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존재하며 재단의 경영지원 및 컨설팅으로 방대한 병원조직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다만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액을 제외한 출자·출연의 여부만을 승인하도록 하는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집행부가 제출한 출연동의안에 2017회계연도 출연금액(36억5천6백)을 명시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재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31
----------	------------

제안연월일 : 2016년 9월 6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출자 또는 출연 여부에 대해 우리 의회가 한정하여 의결하여야 하지만, 동의안에는 상위법이 규정하지 않은 출연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2017회계연도 예산의 편성과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예단을 초래하는 등 절차적 하자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출연금액으로 명시된 36억5천6백만원을 삭제함.

## 2. 주요내용

가. 출연동의안 중 출연금액을 삭제함.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출연금액 : 3,656,000천원” 을 삭제한다.



##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3. 주요내용</p> <p>가. 출연 개요</p> <p style="padding-left: 20px;">○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p> <p style="padding-left: 20px;">○ 관계법령</p> <p style="padding-left: 40px;">-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p> <p style="padding-left: 40px;">- 조 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2조</p> <p style="padding-left: 20px;">※ 조례 제정안을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p> <p style="padding-left: 40px;">“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 <b>출연금액 : 3,656,000천원</b></p>	<p>3. ....</p> <p>가. ....</p> <p style="padding-left: 20px;">○ .....</p> <p style="padding-left: 20px;">○ .....</p> <p style="padding-left: 40px;">- .....</p> <p style="padding-left: 40px;">- .....</p> <p style="padding-left: 20px;">※ .....</p> <p style="padding-left: 40px;">“.....”</p> <p style="padding-left: 20px;"><b>&lt;삭제&gt;</b></p>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동의안

## I. 동의안 개요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설립 추진하고 있음.
- 나. 2017년 설립예정인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공통)법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2조

※ 조례 제정안을 제270회 임시회에 제출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공공보건의료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공공의료기관 경영지원 및 컨설팅
-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질 관리 지원 및 통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

다. 출연의 필요성

-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연이은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예방 중심의 건강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우리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조사 등 씽크탱크 기능 필요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립병원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운영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기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건강관리체계의 핵심 파트너로서 역동적 공공성 확충 지원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확대 발전시켜 다양한 보건 의료분야 전문성과 법인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시의 책무와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재단 운영에 드는 경비 출연 필요

※ 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16. 2), 행정자치부와 출연기관 협의('16. 5) 마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